세무조정계산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： 219,000,000＝(150,000,000－8,000,000\* )＋(22,000,000－2,000,000\* )＋57,000,000 \* 8,000,000 및 2,000,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직부인된 금액임.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：162,600,000원(152,600,000＋10,000,000) ㉮ 일반 접대비 한도액：152,600,000원(36,000,000＋(ⅰ)＋(ⅱ)) (ⅰ) 일반수입금액 기준 ⦁110,000,000＋(71,000,000,000－50,000,000,000)×3/10,000＝ 116,300,000 (ⅱ)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⦁【{ 110,000,000＋(81,000,000,000－50,000,000,000)×3/10,000}－(ⅰ)】 ×10％＝300,000 ㉯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：10,000,000원 ⦁Min[10,000,000, (152,600,000×20%)] ➔ 접대비 한도초과액：219,000,000－162,600,000＝56,400,000 ③ 세무조정 ● 3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,000,000\* 원 -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☞ 다만,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(불분명시 대표자)에 대한 상여로 처분 \*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(일반관리비 8,000,000, 광고선전비 2,000,000) ● 접대비 한도초과액 56,400,000원 -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-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(142,000,000원＋20,000,000원)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